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체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비함 (안 제3조)

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 반영 정비

-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 위임없이 구 조례에서 임의 규정한 심의사항 조문을 삭제 (안 제2조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임의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구 조례로 규정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63, 팩스 02-330-1449